# 시천나루 매표대합실 임대 입찰공고

2017제ARA011호(임대)

1. **입찰건명** : 아라뱃길 시천나루 매표대합실

2. **입찰대상** : 인천광역시 서구 정서진로 677

| 구 분 | 동 수 | 면 적(㎡) | 위 치 | 입찰최저가격 (부가세 포함, 총3년) | 비 고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시천나루 매표대합실 | 1동 | 29.04㎡ | 시천광장 정면 | 9,204,525원 | 임대보증금<br>- 연임대료의 50%<br>입찰보증금<br>- 입찰최저가격의 5% 이상 |
| | 2동 | 29.04㎡ | 시천광장 측면 | 9,204,525원 | |

※ 임대시설물의 세부 위치는 붙임 평면도 참조

3. **임대기간** : 3년간 (임대개시일로부터 3년간)

4. **임대료** : 임대기간 동안의 총 임대료는 입찰시 낙찰금액으로 합니다.
   **입찰최저가격 : 동별 9,204,525원**(VAT포함, 임대기간 3년 기준)

5. **임대료 납부방법** : 일시납 / 분기 분납 중 선택
   - 일시납 : 해당 연('18) 계약일(임대개시일) 시작 전일까지 납부
     (익년부터 연 임대료는 해당연도 임대개시월 20일까지 납부)
   - 분기납 : 아래 표에 지정한 날짜까지 납부
     (잔여임대료에 「국유재산법」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따른 이자부담)

| 구분 | | 1차 분기 | 2차 분기 | 3차 분기 | 4차 분기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2018년 | 해당기간 | '18개시일~'18.3.31 | '18.4.1~'18.6.30 | '18.7.1~'18.9.30 | '18.10.1 ~ '18.12.31 |
| | 납기일 | '18개시일 전일 | '18.4.20 | '18.7.20 | '18.10.20 |
| 2019년 | 해당기간 | '19.1.1~'19.3.31 | '19.4.1~'19.6.30 | '19.7.1~'18.9.30 | '19.10.1 ~ '18.12.31 |
| | 납기일 | '19.1.20 | '19.4.20 | '19.7.20 | '19.10.20 |
| 2020년 | 해당기간 | '20.1.1~'20.3.31 | '20.4.1~'20.6.30 | '20.7.1~'20.9.30 | '20.10.1~'20.12.31 |
| | 납기일 | '20.1.20 | '20.4.20 | '20.7.20 | '20.10.20 |
| 2021년 | 해당기간 | '21.1.1~21.1.31 | | | |
| | 납기일 | '21.1.20 | | | |

## 6. 주요 계약내용

가. 임대보증금 : 연간 임대료의 50%
(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계약체결 전 일시납부하며, 임대차계약 종료시 보증금 반환이자 없음)

나. 제소전화해 신청 : 임대차 계약체결 즉시 및 임대인의 요구일 전까지 임대시설의 명도 등 임대차계약 내용 (민사소송법 제385조)

다. 권리금 :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시 임차인은 차기 임차인에게 자신이 설치한 시설의 인도 조건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권리금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을 일체 요구할 수 없음

라. 운영·유지비 : 전용공간 설비, 시설 유지관리 및 사용에 따른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

* 전기, 청소, 수선유지비, 시설관리비 등

## 7. 입찰참가자격

가. [개인의 경우] 만 20세 이상의 성년자 (주민등록등(초)본으로 확인)
[법인의 경우] 법인등기부상 등록된 법인 (법인등기부등록증으로 확인)

나. [공 통]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국세 및 지방세 완납한 자
(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로 확인)

다. [공 통] 해운법 제4조에 의한 내·외항여객운송사업면허를 보유한 업체

라. [공 통]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에 의한 유도선사업면허를 보유한 업체

마. [공 통] 단독 또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가능하나, 공동참여의 경우에는 주간사 지분율은 50% 이상, 각 참여사의 지분율은 최소 10% 이상이어야 함

바. [공 통] 매표대합실 개별 동을 1개 단위로만 입찰 참여 가능(1동 또는 2동)

## 8. 유의사항

가. 임차인은 임대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소 1척 이상의 선박을 확보하여 운항관련 인허가를 득한 후 아라뱃길 구간에 운항을 개시하여야 합니다.
(※ 현재, 아라뱃길 구간 내 운항사업을 영위중인 여객유람선사는 제외)

나. 선박 확보, 운항개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임차인은 계약을 취소하며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우리공사의 승인을 득하였을 경우 최단 필요기간에 한해 연장이 가능함.

## 9. 입찰참가신청 일정 및 장소

가. 기 간 : 입찰공고일로부터 2017년 12월 14일(목) 16:00 까지

- 신청가능시간 : 신청기간 내 10:00~17:00 (토, 일 및 공휴일 제외)

나. 장 소 : 아라뱃길관리단 항만관리부 김현갑 대리(☎ 032-590-2312)

- 주 소 : 인천광역시 서구 정서진1로 41 경인항통합운영센터 4층

다. 제출서류(방문제출 및 입찰참가신청 마감 전까지 도착분만 인정)

(1) 입찰참가 신청서(우리공사 소정서식)

(2) 입찰보증금(납부영수증 또는 보증서)

(3) 사업자등록증

(4) 주민등록등본(법인명의 계약 시 법인등기부등본)

(5)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(여권, 주민등록증 등 사진이 포함된 것) 사본

- 대리인 제출 시, 위임장 및 본인 인감도장, 대리인 신분증 제출

(6) 본인명의의 예금통장 사본(입찰보증금 환불용)

(7)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

(8) 해운법 또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의한 운항면허증(유도선·여객선 등) 사본

## 10. 입찰일시 및 장소

가. 입찰 일시 : 2017년 12월 14일(목) 16:00

나. 입찰참가대상 :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자

다. 입찰서 제출방법 : 본인(대리인) 직접 제출(인감도장 및 신분증 지참)

- 대리인 제출 시, 위임장 및 본인 인감도장, 대리인 신분증 제출

※ 우편 입찰은 허용되지 않습니다.

## 11. 낙찰자 결정 : 입찰최저가격 이상,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참여 시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(단, 1인이 입찰한 경우에는 즉시 낙찰자로 결정하며 2인 이상이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)

## 12. 입찰 보증금 납부 및 귀속

가. 임대료(입찰최저가격)의 5/100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**입찰 참가신청 마감일 (12.14(목), 15:00)까지**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.

-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 지정된 계좌에 납부하신 후, 납부 영수증을 입찰 참가신청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.(보증금 반환이자 없음)

**납부계좌 : 국민은행 462890-14-744988 (예금주 : 한국수자원공사)**

- 입찰보증금을 보증서로 납부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

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 등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.

- 보증기간 : 입찰참가 신청마감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후까지

나. 낙찰인이 **낙찰자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까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선정은 취소**되며, **입찰 보증금은 우리 공사에 귀속**됩니다.

다. 낙찰자 이외의 입찰보증금은 신청인이 입력한 환불계좌로 입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환되며, 그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합니다.

라. 환불계좌는 반드시 신청인 본인명의 또는 공동신청 대표자 명의의 예금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.

마. 신청접수 시 신청인이 기재한 환불계좌의 오류로 인한 환불금 지급오류 및 지연에 대하여 우리공사는 책임을지지 않습니다.

바. 허위·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낙찰된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우리공사에 귀속됩니다.

## 13. 기타사항

가.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, 입찰에 부하는 사항, 임대차계약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여야 하며, 투찰 시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.

나. 본 입찰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의 규정을 준용합니다.

다. 기타 자세한 사항(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및 임대시설물 현장 확인요청 등)은 아라뱃길관리단 항만관리부 (☎ 담당자 : 김현갑, 032-590-2312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2017. 12. 7.

한국수자원공사 아라뱃길관리단장

**첨부1** **참가 신청서**

# 참 가 신 청 서

| 처리기간 |
| --- |
| 즉 시 |

※ 아래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

| | | | | |
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
| 신청인 | 성 명<br>(법인명) | | 주민등록번호<br>(법인등록번호) | |
| | 주 소 | | 전 화 번 호 | |
| 신청개요 | 공 고 번 호 | 2017제ARA011호(임대) | 신 청 일 자 | . . . |
| | 신 청 건 명 | 시천나루 매표대합실 임대 입찰 공고<br>(동수 기재) ( ) | | |
| 입찰보증금 | 납 부 | · 보증금율 : 임대료의 % (입찰최저가격의 5% 이상)<br>· 보증금액 : 금 원정(₩ )<br>* (입금계좌) 국민은행 462890-14-744988 (예금주 : 한국수자원공사) | | |
| | 보증금 일부 귀속 확인 | · 본인은 신청 후 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 입찰보증금이 귀 공사에 귀속됨을 숙지하였습니다. | | |
| 대리인 위 임 | 본 계약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.<br>본 인 : (서 명)<br>대 리 인 : 1) 성 명 (서 명)<br>2) 주민등록번호 | | | |

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자 귀 공사에서 정한 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참가신청을 합니다.

2017 . . .

신청인 (서 명)

한국수자원공사 아라뱃길관리단장 귀하

**첨부2** **입찰서**

| 집행자 | |
|---|---|

# 입 찰 서

건 명 : 시천나루 매표대합실 임대 입찰 공고

입찰금액 : 일금 원정(₩ )

※ 부가가치세(면세사업은 제외)를 포함한 총액으로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입할 것
※ (참 고) 입찰최저가격 9,204,525원(부가세 포함, 총 임대기간 3년 기준)

본인은 입찰 공고문 및 계약조건, 시설의 용도 및 현상태 등에 대하여 확인하였으며, 입찰 공고문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공사에 의하여 수락되면 즉시 계약을 체결하고 시천나루 매표대합실 임대차 계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운영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입 찰 자 주 소 :

성 명 : (서 명)

한국수자원공사 아라뱃길관리단장 귀하

# 첨부3 임대물건 및 위치도

< 위 치 도 >




< 임 대 물 건 >



**첨부4** **임대차 계약서**

**임대차물건의 표시**

| 소재지 | 동수 | 면 적 (㎡) | | | 용도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계 | 전용 | 공용 | |
| 인천시 서구 정서진로 677 시천나루 매표대합실 | 1동 | **29.04** | **29.04** | - | 매표·대합실 |
| | 2동 | **29.04** | **29.04** | - | 매표·대합실 |

위 표시 임대차물건(이하 “목적물”이라 한다)에 대하여 2017년 00월 00일 다음과 같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.

1. **(임대인) 한국수자원공사 아라뱃길관리단장 (306-82-00471)**
   인천광역시 서구 정서진1로 41

2. **(임차인) ****시 ****구 ****동**

**제1조(계약의 성립)**

① “임대인”은 목적물을 “임차인”에게 임대하고 “임차인”은 이를 임차한다.

② “임차인”은 목적물을 지정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목적물을 사용・수익하지 못한다.

**제2조(계약기간)**

① 임대차기간은 2018년 00월 00일부터 2021년 00월 00일까지(3년간)으로 하며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의 갱신을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며, 임대인은 임대인의 자산관리규정에 의거 자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해 계약기간을 3년간 갱신할 수 있다.

②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 “임대인”은 6개월 전, “임차인”은 2개월 전에 해지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
③ 목적물의 일부에 대한 계약해지는 할 수 없다. 다만, 쌍방의 서면합의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.

**제3조(임대료 및 임대보증금)**

① 연간 임대료는 목적물 전체에 **금*****원정[₩ (부가가치세 포함)]**으로 하며 "임차인"은 연간 임대료를 **매년 임대개시월 20일**까지(계약 첫 해에는 임대인이 지정하는 날까지)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② "임차인"이 제1항의 임대료를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 "임대인"은 이를 허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"임차인"은 **임대인이 지정하는 날까지**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잔액에 대해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따른 이자를 부담하여야 한다.

③ 임대차기간 도중에 이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임대료는 일할 계산한다. 다만, "임대인"의 귀책사유로 목적물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제 사용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계산한다.

④ 납부기한까지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"임차인"은 미납 임대료에 대해 국유재산법 및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.

⑤ 제4항에 따라 임대료 징수가 지연된 경우 임대인이 납부한 임대료에 대해서는 이행시기가 먼저 도래한 임대료 및 가산금액에 우선 충당하며 변제의 순서는 연체료, 부과이자, 임대료 순으로 한다.

⑥ 임대보증금은 연간 임대료의 50%인 **금 원정 [₩ ]**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임대 개시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, 보증금 반납 이자는 임차인에게 지급하지 않는다.

⑦ 제6항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할 경우 보증기간은 본 계약기간 개시일로부터 계약기간 만료 후 60일까지로 하여야 한다.

⑧ 임차인은 임대료 등 제비용 납부를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없으며,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, 처분,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.

**제4조(운영·유지비)**

① "임차인"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시설, 설비, 전기 등의 사용료 및 "임차인"의 명의로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"임차인"이 납부한다.

② 단, 전기료는 "임대인"이 우선 납부 후 검침량에 따라 "임차인"에게 고지서를 발급하며 "임차인"은 "임대인"에게 납부한다.

**제5조(권리양도 등의 금지)**

"임차인"은 제3자에게 이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(증여, 대물변제, 대여 등)

하거나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할 수 없다.

**제6조(보험)**

① “임차인”은 “임대인” 이 가입한 임대건물에 대한 재산종합보험료 중 임대 전용면적에 비례하여 산정한 보험료를 부담하고 임대료에 포함하여 납부하여야 한다.

② “임차인”은 “임대인” 또는 다른 임차인과의 사이에서 화재발생으로 인한 상호 소유재산의 보호와 배상책임 등 이해관계의 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“임차인” 소유의 시설, 집기 등에 대한 보험에 가입한 후 “임대인”에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7조(제소전화해(提訴前和解))**

“임차인”은 민사소송법 제385조에 따라 임대차계약 내용(계약해지에 따른 임대시설물 명도 포함)에 동의하고 “임대인”과 “임차인”은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체결 후 즉시 제소전화해 신청해야 한다.

**제8조(부가가치세)**

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“임차인”의 부담으로 한다.

**제9조(시설물의 설치)**

① “임차인”은 “임대인” 의 사전동의를 얻어 “임차인”의 비용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으며 “임차인”은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“임대인”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. 단, 관계기관 및 지자체 등의 인·허가가 필요한 사항의 경우 사전에 이를 득하여야 한다.

1. 목적물 내·외부 장식, 칸막이의 설치 또는 변경행위
2. 기설공급외 전등 또는 전원의 이전, 급배수 등 설비 신설, 증설 등

② “임차인”은 제1항에 따라 “임차인”이 부담한 제반 유익비 일체의 상환청구권을 포기한다.

③ 제1항의 시설 설치 등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조세공과금은 “임차인”이 부담한다.

**제10조(수선유지)**

① 건물의 유지관리는 “임대인”이 담당하며,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보완・유지해야 한다. 다만, “임차인”의 과실 또는 필요에 의해 발생되는 수선은 “임차인”의 부담으로 하며 “임차인”은 동 비용에 대한 상환청구를 하지 않는다.

② 제1항에 의한 보완조치 및 시공을 하는 경우 “임차인”은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.

③ “임차인”은 목적물내 수선할 곳을 발견한 경우 “임대인” 에게 즉시 통보해야 하며, “임차인”이 수선하는 경우에도 “임대인”과 사전협의해야 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 규정에 따른 “임차인”의 의무나 부담에 해당하는 사항을 소홀히 하여 목적물의 유지보전상 “임대인”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“임대인”은 필요한 수선 또는 조치를 한 후 “임차인”에게 그 실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“임차인”은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.

**제11조(재산보호)**

① “임차인”은 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·관리하여야 한다.

② 목적물내의 화재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소방기기는 “임차인”이 구입·비치하여야 한다.

③ 목적물내의 “임차인”의 재산에 대한 안전관리는 “임차인”의 책임이며, “임대인”의 귀책사유가 있음을 “임차인”이 입증하지 않는 한, 화재, 도난 등 목적물 내에서 발생하는 “임차인”의 손해에 대하여 “임대인” 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
**제12조(임차인의 금지사항)**

“임차인” 또는 그 사용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
1. 공서양속을 해치는 행위
2. 건물내외에 명판, 간판 또는 광고물 등을 “임대인”과 협의없이 설치하거나 게시하는 행위
3. 목적물 또는 건물내 기타 장소에 인화성, 폭발성 등 위험이 있는 물품, 기타 인체에 유해한 물품을 반입 또는 보관하는 행위
4. “임대인”이 인정하는 것 이외의 전열기기, 기타 냉・난방용 기자재를 반입 또는 사용하는 행위

**제13조(임대인의 면책사항)**

"임대인"은 지진, 풍수해 등의 천재지변과 전쟁, 폭동, 기타 법률상·사실상 불가항력적 사유나, 그 밖의 "임대인"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"임차인" 또는 "임차인"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
**제14조(손해배상)**

① "임차인" 또는 그 사용인과 고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목적물(목적물이 속해 있는 건물과 시설물을 포함한다)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"임차인"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"임대인"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손해(손해액은 시가를 기준으로 "임대인"이 산정하는 바에 따른다)를 배상하여야 한다.

② "임차인" 또는 그 사용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"임차인"은 즉시 자기비용으로 배상하여야 한다.

③ "임대인"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제1항의 손해발생에 대해서는 "임차인"의 행위로 간주하고 "임대인"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**제15조(계약의 변경)**

"임대인"과 "임차인"은 정당한 사유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상호 협의하여 이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.

**제16조(계약의 해지)**

① "임대인" 또는 "임차인"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"임차인"이 임대료 및 전기료 납부를 6개월 이상 연체 또는 해태한 경우
2. 이 계약에 위배되는 "임차인"의 행위에 대해 "임대인"의 시정요구가 있었으나 이를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3. 천재지변, 전쟁,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4. 그 밖의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"임대인"과 "임차인"이 이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한 경우

② 제1항 제2호에 따른 해지로 인해 "임대인"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"임차인"은 "임대인"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**제17조(선박운항)**

① “임차인”은 해운법,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등 관련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, 인천항·경인항 선박통항규칙을 충족하는 선박을 투입하여야 한다.

② “임차인”은 낙찰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소 1척 이상의 선박을 확보하여 운항관련 인허가를 득한 후 아라뱃길 구간에 운항을 개시하여야 한다. 운항개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**제18조(명도 및 원상복구)**

① 이 계약이 종료될 때에는 “임차인”은 이 계약종료일 이전 “임차인”의 소유 및 점유 하에 있는 모든 물건을 반출하여야 하며 목적물을 “임대인”의 요구대로 원상복구하여 “임대인”에게 명도하여야 한다.

② “임대인”은 “임차인”이 부설한 설비, 칸막이, 기타 구조상의 변조시설 등에 대해 “임차인”의 요청에 따라 “임차인”의 비용부담으로 원상복구작업을 대행할 수 있다.

③ 계약종료일까지 목적물이 원상복구 및 명도가 완료되지 않는 경우에는 “임대인”은 임의로 원상복구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“임차인”의 부담으로 한다.

④ “임차인”의 사정으로 제1항에서 규정하는 “임차인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계약종료일로부터 실제로 명도 또는 원상회복완료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한 임대료와 관리비를 손해배상금으로 “임대인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

⑤ 이 계약종료 후에도 “임차인”이 목적물을 명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 또는 점용할 경우에는 “임대인”은 “임차인”에 대하여 단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, “임차인”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.

⑥ 임대차계약 기간의 만료 시 “임차인”은 차기 임차인에게 자신이 설치한 시설의 인도 조건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권리금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을 일체 요구할 수 없다.

**제19조(출입권한)**

목적물 보전상태의 점검, 검사, 시설물 보수 등을 위하여 “임대인”이 목적물에 출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“임차인”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비상시 또는 방재, 방범, 구호 등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“임차인”의 승인 없이 출입할 수 있으며,

사후에 그 내용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.

**제20조(해석 등)**

이 계약에 약정되지 않은 사항 또는 이 계약조문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“임대인”과 “임차인”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하되,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판례 및 법률에 따른다.

**제21조(관할법원)**

이 임대차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목적물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. 이 임대차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“임대인”과 “임차인”이 상호 서명 날인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.

**2017년 월 일**

임대인 : 한국수자원공사 아라뱃길관리단장 (인)

임차인 : (인)